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An Overview of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2011

김 선 정**
Sun-Jeong Kim

〈목 차〉

- I. 서 론
- II. 상사중재규범의 등장과 2011년 개정의 배경
- III. 2011년 개정 상사중재법의 내용과 상사 중재제도에 대한 전망
- I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베트남 상사중재법, 베트남상사중재센터, 법의 지배, 2003년 상사중재령,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범법

* 이 논문은 2013. 6. 21.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KATCI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과 교수

I. 서론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의 역사는 법률의 세계보다 앞선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¹⁾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국제적 중재제도로 발전하는 데에는 국제사회에 몇 가지 이정표적 사실들이 있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법들이 국제동향에 맞추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왔다.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정책으로 전제적인 사법제도 역시 정비되는 중에 상업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재제도는 2003년 상사중재령(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의 제정과 더불어 공식화 되었다. 2010년 6월 17일 베트남국회는 상사중재령에 대치할 상사중재법(Law of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을 제정하였고 이는 2011년 1월 1일을 기하여 발효하였다. 새 중재법은 베트남사회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개발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상사중재활동을 개발하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고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지지부진한 중재제도를 정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경제에서 베트남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실무적 요청에 응한 것이다.

베트남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대상국(159.4억 달러), 제20위 수입대상국(57.1억 달러)이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제5위 수준(100억 달러 상회)으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베트남은 2000년대에도 연평균 7.2%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2012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기업이 한국의 중재제도를 활용할 경우뿐만 아니라²⁾ 베트남중재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중재제도와 법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구제도에 관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제도를 살피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개정중재법을 중심으로 베트남중재의 현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1) 동양에서는 중국이 유교의 영향으로 BC 2100-1600경에 중재를 행하였고, 서양에서는 고대그리스에서 페니키아상인, 그리스 도시국가, 고대 로마의 해상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Greenberg, Simon · Christopher Kee ·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3-4.

2) 최근 한국기업과 베트남기업 간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룬 사례로 김광수 · 이양숙 · 이창훈,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보명BOOKS, 2012, pp.244-251.

II. 상사중재규범의 등장과 2011년 개정의 배경

중앙정부가 구소련을 모델로 한 계획경제실시를 시작하던 1960년 ‘경제계약’의 국가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중재(economic arbitration)”의 개념이 등장하고 “경제적 중재”가 행정기관 산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나 집단농장이 국가에서 할당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시하고 그들 생산단위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었다. “경제적 중재”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근거법령이나 부여된 기능으로 볼 때 행정부 조직의 일부였다.³⁾

베트남정부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3년 대외무역중재와⁴⁾ 1964년 해상중재를⁵⁾ 설립하였다. 이는 비정부기관이며 자체 규칙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통제경제하에서 실제로는 독립성이 결여된 정부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⁶⁾ 당시 베트남의 교역국이 사회주의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감독기관인 대외무역부와 교통부의 의중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역할은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40여년 가까이 실질적인 전쟁상태를 겪은 끝에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켜 전세계에서 미국에 승전하여 공산주의를 쟁취한 유일한 국가가 된 북베트남정부는 이후 서구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소련경제모델을 고수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1986년 베트남공산당은 외국과의 관계개선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개시하였고 이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로의 전환을 뜻하였다. “Doi Moi”로 잘 알려진 쇄신정책으로 베트남은 이후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세제우대, 값싼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고 국제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시스템은 매우 미비하였다. 경제계약령과 분쟁해결령 등 각종 영(ordinance)이 폐지되면서 과거의 “경제적 중재”도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 그 대신 인민법원 내에 경제법원이 설치되어 사업활동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1993년에 순수민간기관으로 VIAC이 과거의 대외무역중재와 해상중재의 두 기관을 통합하여 ICC산하에 설립되었다.⁷⁾

베트남은 분쟁해결방식으로 중재보다는 조정(conciliation)을 선호하는 나라로 소개되어 왔다.⁸⁾ 1993년 규칙은⁹⁾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정부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이나 소송 등

3) Hanh, Le Hong,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and in Vietnamese law?”, p.1. Retrieved June 1, 2013 from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4) Decision No 591 CP(30/4/1963)

5) Decision 63/CP(5/10/1964)

6) Hanh, *op.cit.*, p.2.

7) Decision 2004TTg(28/4/1993)

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중재는 허용하지 않았다.¹⁰⁾ 다만 동 규칙과 1987년 12월 29일 처음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합작투자나 사업협력약정을 둘러싼 외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분쟁은 국제중재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중재를 활용하기에 앞서 협상이나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이 대결구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밟는 것보다 조정을 선호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곧 바로 법원으로 가는 태도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¹¹⁾ 국제사회는 베트남 법원이 복잡한 국제거래 분쟁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판결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에서 당사자는 제3국의 중재인이 외국 중재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실행되지 못한 것은 사법부 독립성 부족, 공간된 판결문 부족, 민사분쟁을 범죄시하여 해결하려는 경향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¹²⁾ 이와 같은 상황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 투자를 포함한 국제거래를 회피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각국이 국제중재제도를 정비하는 이유이다. 또한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이 존재하고 각국이 일사불란하게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선호되는 것은 중재이다.¹³⁾

1994년 베트남정부는 최초의 중재법령인 경제중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영(Decree)을 공포하여 '경제적 중재센터(economic arbitration center)'의 설립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¹⁴⁾ 이에 따라 몇몇 도시에 중재센터가 설립되어 국내중재를 다루었다.¹⁵⁾ 1994년 시행령은 비정부 중재기관에 통일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한 데에 의미가 있다.¹⁶⁾ 1995년에는 뉴욕협약의 비준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영이¹⁷⁾ 제정되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행하여지는 국제중재의 비효율성에 대하여는 국제중재판정의 집행

-
- 8) Lien, Bui Thi Bich,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 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p.570; 2006~2007년 상사분쟁의 70%는 협상, 20%는 경제법원 제소, 10%는 중재 기타방법으로 해결되었다. Gutterman, Alan S. & Robert L. Brown, "GOGOLABAL § 40 : 54"(2012). Retrieved Oct. 11, 2013 from <http://international.westlaw.com>.
- 9) Regulation in Detai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Decree No.18-CP.
- 10)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규칙상 명백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무관청이 결정하였다. Tran, Thuy Le, "Vietnam : Can an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exist?", *Loyola 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20, 1998, p.375.
- 11) Tran, *op.cit.*, p.375.
- 12) Herbert, William A. et al.,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 year in review: 2010", *International Law*. Vol.45, 2010, p.467.
- 13) Tran, *op.cit.*, p.363.
- 14) Decree 116-CP(5/9/1994)
- 15) 당시 법령에 따르면 경제중재센터의 중재결정은 당사자를 기속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절차에 따른 해결을 탄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진전한 의미의 중재인지 의문이다. Quinn, Brian J. M., "Note: Legal reform and its context in Vietnam",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Vol.15, 2002, p.250.
- 16) Hanh, *op.cit.*, p.2. 당시 6개의 중재기관이 설립되었으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령이 경제계약, 기업활동, 주식과 사채거래에서 야기되는 분쟁에 국한하여 다루도록 제한하였고 경제활동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다툴 사건이 많을 수 없었다.
- 17) 42/L/CTN(14/9/1996)

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고,¹⁸⁾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UNCITRAL모범법과 중재규칙을 베트남 국내법에 수용하는 것,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할 절차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것, 조정을 선호하는 베트남의 전통적 문화와 현대적 중재제도를 혼합하는 분쟁해결방식의 개발,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가 되는 것 등이 제안된바 있다.¹⁹⁾

2003년 베트남정부는 베트남법률가협회의 도움을 얻어 상사중재령을²⁰⁾ 제정하였다. 이는 1994년의 Decree No. 116-CP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상사중재령은 당시 세계적 중재기관들이 채택한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요원칙을²¹⁾ 일부 수용함으로써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 중에 섭외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있는 경우,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외국법을 분쟁해결에 적용될 법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였는데 이는 베트남법이 세계적 정합성을 지향함을 나타낸 데 큰 의미를 지닌다.²²⁾ 아울러 민사소송법,²³⁾ 민사판결집행법이²⁴⁾ 제정되어 중재판정의 집행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국제중재와 국내중재의 차별적 취급문제와 VIAC을 제외한 대다수 중재기관이 형해화한 것에²⁵⁾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²⁶⁾ 또한 상사중재령 적용에 있어서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과 중재인 문제에서 심각한 장애들이 드러났다. 예컨대 많은 분쟁들이 중재관할에서 배제되었고 중재적격성이 불투명한 영역들, 법원과 중재 간의 관할 분쟁, 중재판정취소에 따른 손실 등이 제기되었다. 또 중재절차 개시 후 임시조치 또는 보전조치의 신청이 허용되었으나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었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지원이 없는 점,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인인 “당사자의 부동의”가 남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취약한 법제도에 더하여 협상과 비공식적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베트남의 기업문화는 중재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

18) Triggs, Gillian, "Is there an 'ASIAN' style of dispute resolu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23, 1999, pp.551-553. 대부분의 지개발국처럼 국제중재를 외국의 절차이며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시각,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조항이 결여된 외국인투자법 등 집행 법률의 결여, 베트남에서의 사업계약 관련 분쟁은 오직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보는 정책기조, 정부의 불안정과 부패, 외국과 상호협정의 부족 등이 이유로 꼽혔었다. 상호협정은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컨대 베트남과 오스트레일리아간 투자상호협정에는 투자분쟁을 ICSID나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ran, *op.cit.*, pp.376-378.

19) Tran, *op.cit.*, pp.381-387. 베트남은 뉴욕협약에는 가입하였다.

20)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08/2003/PL-UBTVQH11(dated Feb. 25. 2003). 이는 'Ordinance'인데 국회사임위원회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베트남헌법 제91조 제4항)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는 규범이다. 계경문·김종욱·이경희,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p.133.

21) 중재계약의 독립성, 중재조항에 근거한 관할결정,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한 당사자의 권한, 소송중지, 중재에 대한 법원의 지원,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종국성 등.

22) 그 밖에 외국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해 분쟁을 취급하는 중재기관과 다른 중재기관의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Hanh, *op.cit.*, p.3.

23) Code of Civil Procedures. Code No. 24/2004/QH11(dated Jun. 15. 2004).

24) The Law on Execution of Civil Judgements. Law No.26/2008/QH12(dated Nov. 14. 2008)

25) Quinn, *op.cit.*, pp.251-253.

26) Hanh, *op.cit.*, pp.4-14.

중재령을 기초로 베트남 정부는 2004년부터 WTO가입을 위한 법제 준비를 하여 오던 중에 2005년 상사법, 같은 해의 투자법 제정에 이어 2010년 6월 17일에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하여 상사중재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²⁷⁾

상사중재법은 새 법이 베트남의 현존하는 사업관행 및 분쟁해결실무와 적합성 및 필요성을 충족할 것, 외국의 중재법과 유사성 있을 것, 베트남이 가입하고 있는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과 정합성 있을 것을 법제정 방향으로 삼았으며,²⁸⁾ 중재제도이용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재법 제정에 이어서 2011년 7월 28일 중재법시행령이²⁹⁾ 제정되어 2011년9월 20일 발효하였다.³⁰⁾ 베트남의 입법 전통상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가장 높은 효력을 지니나 대부분 일반원칙과 골격만 제시하는데 그치므로 법률시행을 위하여 각 행정부처가 영으로 제정하는 시행령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³¹⁾ 다만 동 시행령은 중재의 실제적 문제보다는 중재센터의 관리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중재관할과 적격성에 관한 대법원 가이드라인이 제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Ⅲ. 2011년 개정 상사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전망

1. 개정 상사중재법의 주요내용

(1) 전체적인 구성

새 상사중재법은 전 13장 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15조), 제2장 중재합의(제16조~제19조), 제3장 중재인(제20조~제22조), 제4장 중재기관(제23조~제29조), 제5장 절차개시(제30조~제38조), 제6장 중재판정부(제39조~제47조), 제7장 임시적 긴급조치(제48조~제53조), 제8장 분쟁해결을 위한 심문(제54조~제59조), 제9장(중재판정(제60조~제64조), 제10장 중재판정의 집행(제65조~제67조),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제68조~제72조), 제12장 베트남에서의 외국중재조직 및 활동(제73조~제79조), 제13장 시행조항(제80조~제82조)으로 짜여 있다. 중재판정부의 관할, 증거수집, 증인소환, 임시적 구제, 중재판정취소 등 UNCITRAL모범법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³²⁾

27) 다만 2011.1.1. 전에 행하여진 중재합의가 새 법의 적용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28) 법제정의 구체적 경과에 대하여는 岩瀬眞央美, “ベトナム商事仲裁法”, 『JCAジャーナル』, 第57卷 8号, 2010, pp.26-28, pp.30-31.

29) Decree No.63/2011/ND-CP dated 28 July 2011 of the Government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30) 동 시행령 발효일부터 상사중재령의 시행령(2004.1.15. 25-2004-ND-CP)은 실효하였다.

31) Lien, *op.cit.*, p.571.

(2) 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

과거 중재령은 ‘상업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서 야기된 분쟁만 중재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상업 활동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였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다툼을 중재로 다룰 수 없었다.³³⁾ 중재적격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무부가 하여 왔다.

중재법은 적용제외조항은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을 3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즉 ①상업 활동에서 야기된 당사자 간 분쟁, ②적어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분쟁,³⁴⁾ ③법이 중재가 분쟁해결을 위한 가능한 수단이라고 규정한 경우다.

첫째 범주와 관련해서 ‘상업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재법에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³⁵⁾ 그 대신 상법이³⁶⁾ 규정한다. 상법에서는 ‘상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사고파는 행위, 서비스, 투자, 상업적 향상,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둘째,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범주는 민사 분쟁 같은 비상업적 분쟁인데 다투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은 소비자가 중재나 재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이나 서비스계약 중에 표준적인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중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셋째, “법률이 중재할 수 있는 분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장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행위에서 야기되는 분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중재령에 비하여 중재법의 해당조항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아직 불분명한 점이 다수 남아있다. 예컨대 일방 당사자가 상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정부기관이 중재합의의 한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의 베트남소재지점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중재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항이 필요한 실정이며 산업계를 대표하여 베트남상업회의소는 이 작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법률서비스, 생명보험, 지식재산, 대학교육, 개인병원의 의료서비스, 노동관계도 중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재법 제정 이전에도 순수한 국내중재를 ad hoc중재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베트남법무성이 인증한 중재센터에서의 처리절차에 따른 것만 인정되었었다.

32) Gibbins, Tilleke &, Michael K. Lee & Doen Ngoctra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1*, 9th ed., Global Legal Group, 2012, p.130.

33) 중재령 시대에 법원은 골프장유지관리서비스는 상업활동이 아니므로 그에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다룰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34) Arbitration Law art. 2.2.

35) 과거 중재령에서는 ‘상업 활동’의 범위를 특정행위로 제한하고 있었다(2003 Ordinance art. 2.3).

36) Commercial Law No. 36-2005-QH11.(31. Dec. 2005). 2006.1.1.발효.

중재법은 베트남인과 외국인 당사자 양자에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국제중재의 중재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경우에 중재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³⁷⁾

중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법률의 명칭도 논쟁거리였다. 중재법으로 하자는 의견과 상사중재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입법의 쟁점이 되었다. 법의 적용범위 즉,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상사중재법으로 결론지어졌다.

(3) 중재합의

중재에 회부하려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UNCITRAL모범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문서(in writing)로 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재조항은 별개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계약서 내의 다른 조항의 수정, 연장, 종료나 무효는 중재계약에 영향이 없다. 서면중재계약은 서면, 전보(telegram),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기타 어떤 형태이든 당사자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것임을 명백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면 된다. 다투는 사안이 유효한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밟고자 하여도 법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령과 달리 중재합의가 분쟁사안을 특정 하는데 실패하거나 중재기관이 추가합의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위임하고 있어도 유효하다.

당사자는 중재센터의 중재인으로 중재법정을 구성하거나 중재법정의 중재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조항과 중재법정을 특정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진다. 만일 당사자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중재법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중재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예컨대 분쟁이 중재법 제2조에 따라 중재대상이 될 수 없는 중재비적격, ②당사자가 중재합의 할 법적 권한이 없거나³⁸⁾ 권리능력이 제한된 경우, ③중재합의의 부정확한 형식,³⁹⁾ ④강요된 합의, ⑤법에 위반한 합의이다.⁴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법은 상품이나 용역공급 약관이나 표준조항 속에 있는 중재조항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⁴¹⁾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37) Lien, *op.cit.*, p.572.

38) 이 경우 수권은 문서로 된 위임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39) 중재령 아래서서는 중재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관정을 무효로 할 재량권이 법원에 있었으나 중재법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원고에게 맡겼다.

40) Arbitration Law art.18.

41) Arbitration Law art.17.

(4) 적용법

당사자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applicable law*) 역시 당사자의 사전합의에 따른다. 만일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정은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따라 적용법을 결정한다.⁴²⁾ 만일 당사자나 중재법정이 선택한 법에 분쟁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국제관습이 적용될 수도 있다.⁴³⁾ 2003년 시행령에서는 외국법은 베트남법의 기본적 원칙(*fundamental principles*)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였다.⁴⁴⁾ 이에 비하면 적용법의 선택에 관한 중재법규정은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⁵⁾

(5) 중재인과 중재기관

중재인은 최소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⁴⁶⁾ 자격요건은 ①민법전이 규정하는 행위능력, ②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및 전공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업무경험이 있을 것을 요한다.⁴⁷⁾ 그러나 학력이나 업무경험이 위 ②가 규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지니며 풍부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자는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⁴⁸⁾ 이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고 평가된다. 중재령에 따르면 소정이 지식을 갖고 교육을 받은 경험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만이 중재인이 될 수 있었다.⁴⁹⁾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은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중재를 담당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학계 간 논쟁이 있었다. 일부는 지나치게 쉬운 자격요건 때문에 질 낮은 중재판정을 내릴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중재법은 중재인에게 중재령과 유사한 지식, 교육,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따로 중재인의 국적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 없다. 따라서 중재법 아래서는 당연히 외국인이 베트남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⁵⁰⁾ 또 *ad hoc* 중재도 할 수 있다. 업계는 국적요건 철폐를 환영하고 있으나 베트남 중재센터에서 외국인을 수용할지 여부와 수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⁵¹⁾ VIAC은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한 첫

42) Arbitration Law art.14.2.

43) Arbitration Law art.14.3.

44) 2003 Ordinance art. 2.3.

45) Herbert et al. *op.cit.*, p.469.

46) 이는 중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Lien, *op.cit.*, p.578.

47) Arbitration Law art. 20.1(a), (b).

48) Arbitration Law art. 20.1(c).

49) 2003 Ordinance art. 12.1.

50) Herbert et al. *op.cit.*, p.469.

51) 베트남의 중재센터로는 Ho Chi Minh시를 거점으로 하는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anoi시를 거점으로 하는 Ha Noi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Can Tho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Hanoi에 소재하는 Vien Dong Arbitration Centre와 Asia Arbitration Centre, Hanoi에 기반을 둔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VIAC)가 가장 유명한 중재기관이다. VIAC은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에 설치되어 1993년 이래 무역계약, 투자분쟁,

기관이다. 중재법정은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법은 중재법정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⁵²⁾ 당사자의 합의가 없든가 선정된 중재기관에 중재인선정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는 경우는 중재법이 정한 절차에⁵³⁾ 따른다.

중재인의 제척사유로는 중재인이 친척이거나 당사자의 대표자인 경우, 다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경우, 중재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재인이 당해 분쟁이 중재신청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 대표, 조정인 등으로 행위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중재인은 중재를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인의 교체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과연 무엇이 ‘공정성’, ‘객관성’,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VIAC같은 중재기관은 중재인행위규범(Codes of Conduct)을 제정하였고, 어떤 중재기관은 국제법조협회의 국제중재윤리규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전문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재인을 바꿀 권한은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구성원이나 중재기관의 장에게 있고, ad hoc중재의 경우 법원에 있다.⁵⁴⁾

상사중재법은 중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다수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재기관의 기능,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조건과 절차, 중재기관 활동의 등기, 중재기관설립의 공시, 중재기관의 법인격 및 기구, 중재기관의 권리 및 의무, 중재기관의 활동종료 등이다. 베트남에서 중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사중재법 제4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5인 이상의 베트남 국적의 중재인이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무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중재기관은 국가의 관리아래 둔다고 하여 중재기관에서의 완전한 사적 자치는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6) Ad hoc중재

상사중재법은 ad hoc중재를 인정한다. 다만 ad hoc 중재판정은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중재판정의 내용 및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등기는 집행요건이다. Ad hoc중재에서 당사자간 중재인조항이 없는 때의 중재인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통지가 없거나 당사자가 중재인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할법원에 피신청인을 위한 중재인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피신청인이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국제운송과 같은 국제적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처리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국내사건도 다루고 있다. VIET NAM NEWS 2013.4.27. 기사에 따르면 VIAC는 2011년 83건, 2012년 64건을 다루었다고 한다. 이들 중 71%가 국제분쟁이며 싱가포르, 한국, 중국, 미국 기업이 주당사자이며 무역, 은행과 금융, 건설, 투자협정, 서비스 및 대리점계약 등을 주로 다루었다.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vietnamnews.vn/opinion/238746/firms-unaware-of-arbitration.htm>.

52) Arbitration Law art. 39.

53) Arbitration Law art. 40.

54) Lien, *op.cit.*, p.580.

중재인선정에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1인 또는 전원은 관할법원에 피신청인을 위한 중재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단독중재에 합의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인선정을 신청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관할법원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7) 사용언어와 중재장소

중재법에 따르면 예컨대 분쟁당사자가 베트남과 외국인의 합작투자법인인 경우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본기업인 때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⁵⁵⁾ 만일 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던 경우에는 중재법정은 언어를 결정한다. 이는 2003년 중재령과 다르다. 중재령에서는 언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베트남어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⁵⁶⁾ 있었다.

중재지에 대하여는 UNCITRAL 모범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사전합의를 통하여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⁵⁷⁾ 만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청취, 감정, 증거조사 등을 하기에 편리한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⁵⁸⁾ 중재절차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⁵⁹⁾ 중재지를 국내로 선택한 경우 청문장소에 상관없이 중재판정은 베트남 국내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8) 중재절차

중재법은 중재절차개시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신청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⁶⁰⁾ 그러나 시효기간의 모호함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피신청인은 반대신청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전에 청구서면 또는 반대서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절차지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신청 할 수 있다.⁶¹⁾ 증거수집과 조사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 없이도 사실확인활동을 할 수 있으며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적 지원은 제한적이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법원과 중재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때문이다.⁶²⁾

55) Arbitration Law art.10.2.

56) 2003 Ordinance art. 2.3.

57) Arbitration Law art.11.1.

58) Arbitration Law art.11.2.

59) Arbitration Law art.49.2.

60) Arbitration Law art.33.

61) Arbitration Law art.37.

62) Lien, *op.cit.*, p.582.

(9) 법원의 관여와 임시구제

1) 법원의 관여

만일 원고나 원고사건의 법원이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고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자동적으로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경우 VIAC과 지방법원에서 동시에 다툼이 진행될 수 있고 관할저촉 자체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법은 UNCITRAL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채용하여 만일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이행될 수 없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관할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⁶³⁾ 다만 중재법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중재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할할 수 있는 감독과 지원(supervisory and supportive)역할을 부여하였다. 만일 당사자들이 법원의 선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정지방법원에게 일정한 사항에⁶⁴⁾ 개입할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역할이 명백해졌고 중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재법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미 업무과다에 시달리는 법원의 부담을 늘리며, 중재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지적도⁶⁵⁾ 있다. 베트남에는 중재관련업무대행기관(People's Procuracy Office)이⁶⁶⁾ 존재한다. 이는 외국에서 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것인데 그 역할 범위는 논란거리이다. 심리절차에서 변호사가 동시에 일방당사자의 대표 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나 몇몇 중재기관은 겸무를 허용한다고 한다. 중재법은 UNCITRAL규칙과 달리 심리에 불출석하거나 허가 없이 심리장소를 떠난 경우를 중재신청의 취소로 간주한다.⁶⁷⁾ 이때는 반대신청서의 제출에 의해서만 중재절차가 재개된다.

2) 임시적 구제조치

중재법 제정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중재와 법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임시적 구제(interim relief)는 2003년 중재령에서는 법원에 제소한 후에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였던 터라 당사자의 신속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이에 관한 권한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였다.⁶⁸⁾ 중재법은 당사자의 재산권의 이전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다툼이

63) Arbitration Law art. 6. “중재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중재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소비자중재합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명료한 개념이다. Lien, *op.cit.*, p.576.

64) Ad hoc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임이나 개입, 중재법정의 관할이나 중재합의의 무효와 관련하여 중재법정의 결정에 대한 항소, 증거수집, 임시구제의 실시, 증인소환, 중재판정의 취소나 ad hoc 중재판정의 등록.

65) Lien, *op.cit.*, p.574.

66) Arbitration Law art. 47.

67) Arbitration Law art. 56. 그 밖에 분쟁당사자가 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중재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법인으로서 합병, 파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에 이른 경우, 법원이 당해 중재판정부에 관할 없음을 결정하거나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로 되었음을 결정한 경우 등에는 절차가 종료된다.

있는 재산을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금전공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2011년 시행령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구제조치 집행은 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임시적 구제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베트남 중재법은 국제적 기준에⁶⁹⁾ 더 가까워졌다.⁷⁰⁾

(10) 중재판정의 작성, 취소, 집행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다수결에 의하여 중재판정문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⁷¹⁾ 만일 다수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중재인이 서명흡결의 사유를 기록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중재판정에는 종국판정, 이유기재, 비용 분담, 판정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다. 다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소한 오류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 후에 당사자는 베트남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국내중재와 외국중재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중재의 경우 중재법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재판부의 관할권 부재, 위조증거, 중재인의 부패행위, 중재판정의 결과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contrary to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law of Vietnam'*)을 열거하고⁷²⁾ 있다.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가는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2003년 중재령에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하고 있던 것에⁷³⁾ 비하여 제한된 것이라는 견해가⁷⁴⁾ 있는가 하면 여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원이 실무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이를 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UNCITRAL모범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도 명기하지 않았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 및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당해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판단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있다.

외국중재의 취소사유는 민사절차법⁷⁵⁾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베트남법에 의한

68) Arbitration Law art. 49.

69) Arbitration Rules, GG. A. Res. 31/98, art. 26. UNCITRAL, 31st Sess., Supp. No. 17, U.N. Doc. A/31/17 (Dec. 15, 1976). Retrieved May 4, 2013. from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arbitration/arb-rules/arb-rules.pdf>; Rules of Arbitration, Int'l Chamber of Commerce, art.23 (Jan.1.1998), http://www.iccwbo.org/uploadedFiles/Court/Arbitration/other/rules_arb_english.pdf.

70) ICC Rule of Arbitration. art.23. Herbert et al. *op.cit.*, p.469.

71) Arbitration Law art.60.1.

72) Arbitration Law art.60.2, art.68, art.69.

73) 2003 Ordinance art. 54.6. 실제로 2003~2006년 사이에 VIAC의 중재판정 167건 중 취소청구된 것은 15건이며 이 중 4건이 취소되었다.

74) Herbert et al. *op.cit.*, p.469.

중재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에 반하는 것,⁷⁶⁾ 의사능력 없는 당사자의 중재합의, 당사자가 선택한 국가의 법에 따를 경우 중재합의가 무효인 때, 채무자가 중재절차 중 필요한 때에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 중재판정이 청구되지 않은 때 또는 청구범위를 넘어 내려진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과 맞지 아니한 때 등에는 반드시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베트남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절차적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베트남법에 기하여 판정의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원은 민사절차법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한다. 그 결과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 내에서의 집행여부는 범무당국이 외국투자자 및 거래자에게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다.

중재법은 중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두 가지 다른 경로가 있는데, 국내중재판정은 중재법과 민사판결집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 중재판정은 1958년 뉴욕협약, 민사절차법, 민사판결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재법은 국내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한 승인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하도록 하였다.⁷⁷⁾ 만일 중재판정이 채무자에 의하여 이행기까지 임의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베트남지방법원의 민사집행기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⁷⁸⁾ 중재법이 중재판정의 중국성과 집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써 중재판정이 민사절차법에 의하여 파기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⁷⁹⁾ 국내중재판정은 기관중재인지 ad hoc 중재인지에 따라 집행절차가 다르다.⁸⁰⁾

한편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법원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데 뉴욕협약 체결국이거나 베트남과 상호주의관계인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당연히 승인·집행되어야 한다.⁸¹⁾

(11) 검찰의 역할

베트남은 완전한 삼권분립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헌법상 대법원은 국회에 소속되어 있다(제134조). 법과의 독립성도 보장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중재판단의 취소절차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이 관련문건을 송부할 기관의 하나로 검찰과 검사가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항소하게 되어 있다. 중재절차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재판단의 취소, 증거수집, 증인심문, 임시조치 등의 적용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분쟁이 존재하는 사회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는 입법과

75) Civil Procedural Code art.369, art.370.

76) 이는 UNCITRAL 모범법의 공서(public policy)위반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해석재량이 너무 넓다.

77) Arbitration Law art.66.

78) Arbitration Law art.66.1.

79) Lien, *op.cit.*, p.590.

80) Arbitration Law art.62.

81) Civil Procedural Code art.343.

정에서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사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검찰의 감독권(민사소송법 제250조)과 유사한 제도는 중국에도 존재한다.

(12) 외국 중재기구의 허용⁸²⁾

시장개방에 맞추어 중재법은 외국인 중재기구가 베트남 안에서 중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외국중재기구가 해당 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외국중재기구는 베트남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표부를 둘 수 있다. 지점도 중재인 선임, 청문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 대표부는 중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광고행위, 시장조사, 다른 홍보활동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된다.

(13) 베트남에서의 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자는 수많은 분쟁을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투자협정단계에서부터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이는 투자수입국에 있어서도 주권면제의 문제와 투자활동 계속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베트남은 2012년 6월 1일 현재 60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s)을 체결하였고 그 가운데 44건이 발효하였다.⁸³⁾ 베트남이 체결한 투자협정의 일부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베트남 정부 간의 투자분쟁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화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일어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 따라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기구인 ICSID에 분쟁해결을 부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⁴⁾ 일부 협정은 분쟁해결을 제3자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하여 외국투자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분쟁해결을 부탁할 경우의 분쟁해결기관으로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중재기관(ad hoc 중재), UNCITRAL 중재규칙에 기한 ad hoc 중재기관, 분쟁당국이 모두 ICSID협약의 조약국인 경우에는⁸⁵⁾ ICSID에서의 조정이나 중재, ICSID협약의 조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ICSID추가제도규칙에 기한 조정이나 중재를 열거하고 있다. 양국간 협정에서 베트남국내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열거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정도씩 된다.⁸⁶⁾

82) Arbitration Law art.73-78.

83) Retrieved June 15, 2013 from http://unctad.org/sections/dite_pccb/docs/bits_vietnam.pdf

84) 베트남 등에서의 Bits와 ICSID간의 관할 중복에 대하여는 Dang, Hop Xuan, "Jurisdiction clauses in state contracts subject t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011, Vol.14 No.1, pp.1-18.

85) 일부 양국간 투자협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베트남이 ICSID 협약국이 아니지만 투자자의 본국은 협약국인 경우를 배려한 것이다. 2013년 5월 20일 현재 158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 149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베트남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Retrieved May 20, 2013 from https://icsid.worldbank.org/n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Home&pageName=MemberStates_Home.

한편 2005년 투자법은 종래의 국내투자장려법과 외국투자법을 통합하여 내외자본구별 없이 동일한 취급을 하여 “투자자”란 베트남법에 따라 투자활동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 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 외국자본기업, 경영가구·개인, 외국의 조직·개인, 해외주재베트남인, 베트남상주외국인, 기타 조직으로 정의하고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 투자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자본을 사용하는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으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베트남에서 투자를 행하는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 외국투자자가 행한 주식 매입, 합병 또는 매수한 베트남기업으로 규정한다. 투자자가 설립한 현지법인은 외국자본기업이라고 하여 다른 베트남현지법인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투자법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에 따르는 분쟁에 대하여 법률규정에 기한 협의, 화해,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베트남영토 내에서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투자자간 분쟁, 국내투자자와 국가관리기관간의 분쟁은 베트남 중재조직 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다(제12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자본기업인 분쟁 또는 외국투자자 간의 분쟁은 베트남법원, 베트남중재조직, 외국중재조직, 국제중재조직, 분쟁당사자의 협의로 구성된 중재조직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제12조 제3항). 베트남영토에서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외국인투자자와 베트남국가투자관리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의 중재조직 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심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대표와 외국투자자 간에 서명한 계약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맹한 국제조약에 있어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2조 제4항 단서).

결국 베트남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은 국내투자자는 베트남국내의 중재나 재판으로, 외국투자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내투자자와 같으나 당해 외국투자자가 그 투자활동을 관할하는 기관의 대리권을 지닌 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 또는 당해 투자자의 본국정부와 베트남정부 사이의 조약에서 베트남국내의 중재 또는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예컨대 베트남 국내외의 ad hoc 중재나 ICSID조정·중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한다. 외국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지배하는 베트남현지법인 즉, 2005년 투자법이 규정하는 외국자본기업에도 양국간 협정의 적용이 있다. 즉 외국자본의 현지법인들도 베트남국내의 중재나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정부와의 계약이나 양국 간 투자협정 등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와 베트남국가관리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의 중재조직이나 법원에서 해결된다. 따라서 외국자본기업과 베트남국가관리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국내의 중재나 법원을 통하여 해결된다.

문제는 2003년의 중재령은 물론이고 2011년 중재법도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인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그 결과 국내투자자와 국가관리기관 간의 분쟁에 대하여 베트남국내의 중재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투자법

86) 상세한 것은 岩瀬眞央美, “ベトナムにおける投資紛争処理制度の改革-仲裁法制を中心とする投資家對國家間紛争の處理-”, 『神戸商科大学創立80周年記念論文集』, 2010, p.51.

제12조 제2항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와 국가관리기관 사이의 분쟁을 국가계약 또는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외국중재 등을 인정한 동조 제4항 단서와의 관계가 불명료해졌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대상국가 사이의 분쟁(ISD)은 외국투자자가 ICSID나 ICSID추가제도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은 ICSID협약상 협약국에서는 자국법원의 판결로 여겨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되고 각 협약국의 집행법령에 따라 집행되지만 베트남은 ICSID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베트남이 1995년에 비준하고 같은 해에 제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령과 2004년 민사절차법에 따라 승인·집행여부가 결정된다. 베트남의 뉴욕협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란 패소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패소당사자가 뉴욕협약에 관한 법령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6가지 사유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거절하는 경우란 베트남법률에 따를 경우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이 중재사건으로 다루어졌거나 당해 외국중재판단을 베트남에서 승인·집행하는 것이 베트남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본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중재판정도 베트남에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 또 2004년 민사소송법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둬 따라 법원의 절차도 용이해졌다.

다만 양국간 협정이나 2005년 투자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ICSID에서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밟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베트남이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정부 자체를 상대로 한 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국영기관이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실질적으로 ICSID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투자법이 규정하는 국가관리기관에 국영기관은 포함될 수 있지만 국유기업은 제외된다고 보면 국유기업은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자본기업인 분쟁으로서 처리된다고 새긴다. 그 결과 베트남국유기업과의 투자분쟁은 베트남법원, 베트남중재조직, 외국중재조직, 국제중재조직, 분쟁당사자의 협의로 구성된 중재조직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제12조 제3항).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분쟁은 그것이 특히 투자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툼을 투자대상국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에 기인하며 그 기원은 주권면제이론에 연원한다.⁸⁷⁾ ICSID중재에 대하여도 공개원칙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국제중재기관이나 베트남국제중재기관에 맡겨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베트남의 새 상사중재법이 이런 분쟁들을 다

87) 이 문제는 이재민·문준조, 「최근 투자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ISD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pp.31-49.

루고자 한다면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의 전망

(1) 앞으로의 입법적 과제

베트남의 새 상사중재법은 그 시안을 25차례나 바꾸는 진통 끝에 제정되었다. 그만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는 반증이 되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법이 제정되었다.

예컨대, 새 중재법은 중재절차에서의 언어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외국요소”에 의하여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에 관하여 외국요소가 없는 분쟁과 외국요소가 있는 분쟁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베트남어를 사용토록 하되, 일방당사자가 외국투자자본을 가진 기업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조 제1항의 “일방의 당사자가 외국투자자본을 가진 기업”은 외자계현지법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당해 예외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상사중재법상 현지법인이 당사자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외국요소가 없는 분쟁으로 취급된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법규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적용법규의 경우 외국요소가 없는 분쟁에 대하여 베트남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외국법인과 그 베트남현지법인이 분쟁당사자로서 베트남어의 사용이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해분쟁에 외국요소가 있는 분쟁이어야 하는데, 상사중재법은 외국요소가 있는 분쟁은 민법전에서 “외국요소가 있다”고 규정된 상사관계 및 기타법률관계이다. 결국 상사중재법상 외국요소가 있는 분쟁인지 여부는 민법에 맡겨져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요소(foreign elements)가 있는 민사관계는 당사자의 적어도 일방이 외국의 조직, 기관 또는 개인이거나 해외주재베트남인 또는 베트남 공민 및 조직일 것을 요한다. 설립준거법에 따를 경우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 여기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식의 제한은 모처럼 제정된 상사중재법의 적용범위를 좁게 만드는 결과가 되며 향후 개정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중재적격성에 관한 조항도 없다. 중재법시행령에 이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인민대법원(Supreme People’s Court)이 이를 제정중이나 내용상 반대의견도 있다.⁸⁸⁾

(2) 베트남 상사중재법과 「법의 지배」문제

새로운 중재법령의 제정과 함께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은 베트남에서 진정한 법의 지

88) Lien, *op.cit.*, p.571.

배가 실현되는가라는 점이다. 법치주의가 의심받고 있는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중재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과⁸⁹⁾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1986년 개혁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베트남의 법률과 법령체계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외국의 법률수출 또는 법 원조 정책은 베트남의 사법시스템과 법령의 현대화를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⁹⁰⁾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시민법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베트남법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이념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이었다. 이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이었다. 공산당지배는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국가의 사회관리를 정당시 해왔다. 국가권력의 집중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법의 지배와는 상충된다. 사회주의자의 적법성(*Phap che xa hoi chu nghia*)과 민주적 중앙집권(*tap trung dan chu*)이 법제도의 기본원칙이었다.⁹¹⁾ 최근에 베트남은 법치국가(*Nha nuoc phap quyen*)의 개념을 도입하고, 서구 상사법에 있어서의 권리분위 접근방식을 차용하였다. 예컨대 정치국은 2010년까지 법체계를 개발하고, 2020년까지는 영업자유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들이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⁹²⁾ 이와 함께 소수의 법학자와 법률실무자그룹으로 알려진 “법률해설과 분류(*Giai thich phap luat*)”의⁹³⁾ 이론에 용해되어 있는 소비에트식 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유교주의와 서구식 자유주의가 혼재되어 법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인 법체계에서도 베트남에서 법의 해석은 입법의 추가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생활 속의 법(*dua phap luat vao cuoc song*)”이라는 사법당국의 목표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법의 해석에 대한 사회주의 기득권세력의 잔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새로운 법학교육과 사법훈련을 받은 학자와 법률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과거 너무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법령을 남발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령

89) 이 문제는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인 공서와 법의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 pp.23-50.

90)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하여는 Sidel, Mark, *Law and Society in Vietn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195-222 ; Lien, Bui Thi Bich,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Vietnamese version of the rul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Vol.21, 2011, pp.332-333.

91) Lien, *op.cit.*, p.324.

92) Resolution No.48-NQ/TW(Political Bureau).

93) 법의 해석에 대하여 두 입장이 있다. 일부에서는 “*Giai thich phap luat*”가 공식적으로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과 분류를 할 수 있는 조직이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인되어 있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표적인 그룹이다. 법원이 이와 같은 공인된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그룹의 해석은 법 자체가 되며 추가적인 입법과정이라고 간주될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서구식 법해석 관념과 비슷하게 *Giai thich phap luat*는 법의 분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의 적용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 기능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입법에서는 전자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 Lien, *op.cit.*, p.325.

간의 부조화와 상충,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2003년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관을 발족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법령의 12%가 실체법 및 절차법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대중적 비판을 받아 온 많은 법령이 폐기되었지만 아직 상당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온전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의 지배’가 갖는 다양한 의미에 맞추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령은 상당 수준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더하여 법의 집행과 집행을 위한 해석문제는 빠른 입법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집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라고 할 것인데, 베트남에서는 반드시 집행이 뒤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⁹⁴⁾ ⁹⁵⁾ 이는 집행을 중시하는 중재제도의 발전에 근본적 장애라 할 수 있다.

(3) 국제상사중재제도 활성화에 대한 전망

아시아의 경우 중재법의 연륜에 비하여 각국 중재기관의 출범이 빠르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최근에 와서 싱가포르, 홍콩, 한국, 중국 등이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⁹⁶⁾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⁹⁷⁾ 태국중재기구(TAD),⁹⁸⁾ 필리핀분쟁해결센터(PDRC),⁹⁹⁾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¹⁰⁰⁾ 인도네시아국립중재회의(BANI),¹⁰¹⁾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KLRCA),¹⁰²⁾ 일

94) Lien, *op.cit.*, p.333.

95)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 지방주의의 극복도 과제이다. 실제사례에 대하여는 Quinn, *op.cit.*, pp.249-250.

96) 국내에도 이에 관한 문헌은 매우 풍부하다.

97) 1991년부터 운영을 개시한 SIAC은 모범법의 중재규칙과 런던국제중재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었다. 최초의 중재법인 1953년 중재법은 뉴욕협약의 중요조항과 모범법을 반영한 국제중재법(1995.1.27.발효)과 국내중재를 다룬 중재법(2001.10.17.발효)으로 분리되었다. 국제중재법은 모범법과 달리 중재관련 법원절차의 비밀보장조항, 조정전치, 중재인면책, 임시명령과 지시의 집행에 대한 법원의 조력, 중재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등 독특한 규정을 두었다. 현재 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이 병존하며 SIAC중재규칙은 UNCITRAL모범규칙을 기초로 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규칙을 참고로 2010.7. 개정되었다. 싱가포르정부의 육성 의지에 관하여는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國際商事仲裁(上)”, 『國際商事法務』, Vol.40. No.5, 2012, pp.684-686. SIAC에 대하여는 앞 자료, pp.691-694.과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國際商事仲裁(下)”, 『國際商事法務』, Vol.40. No.5, 2012, pp.851-866.

98) 중재는 1934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고 1987년 중재법이 제정되었다.

99) 상세한 것은 김선정,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 - UNCITRAL모범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2009, pp.193-227.

100) 1985년 출범하였다. 중재법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모두 적용되며 1990년 모범법과 뉴욕협약을 수용하였다. 일국양제에 따라 대륙과 홍콩 간 중재판정의 집행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홍콩중재는 전통적으로 ad hoc중재가 많아 HKCIAC은 물적 시설 제공 위주였으나 최근 직접 절차 관리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 상세한 것은 김선정, “홍콩중재령에 있어서 UNCITRAL모범법의 수용”, 『중재연구』, 제7권, 1991, pp.247-293.

101) 오랫동안 네덜란드식민지시대의 민법 등이 적용되어 왔으나 1999년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개입을 크게 줄였다.

102) 1952년 중재법이 국내의 중재에 모두 적용되었으나 1980년 개정으로 KLRCA의 국제중재는 1952년 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상사중재협회(JCAA),¹⁰³⁾ 몽골중재국제법원(MIC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특히 KCAB, CIETAC, SIAC, HKIAC 등이 중재허브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베트남이 주요한 중재지가 되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시아 각국 중재기구의 성장은 그들이 상거래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업자단체의 일부이거나 변형된 조직으로서 연결고리를 갖고 국가의 강력한 육성시책이 뒷받침된다는 점,¹⁰⁴⁾ 105) ICC규칙이나 UNCITRAL 모범법 및 규칙을 수용하여¹⁰⁶⁾ 국제적 수준의 조화를 이루는 점,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점,¹⁰⁷⁾ 유능한 중재인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재기관의 독립성, 우수한 중재인의 독립성·중립성, 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중재판단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상사중재제도가 투자분쟁을 비롯한 국제상거래 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넓게 보면 고도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세안의 선진개발국에 비하여 1당지배의 정치적 리스크와¹⁰⁸⁾ 과잉투자, 국영기업부실, 은행권불안, 임금상승을 내용으로 한 2013년 노동법개정, 물가억제를 위한 디플레이정책 등 불안요인이 있고, 중재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의 지배, 법원의존도가 높은 기업문화 등 시간이 걸리는 선결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쇄신정책의 추진에 따라 법령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상사중재법의 제정은 중재제도의

103) 일본상사중재협회 취급건수는 2010년 26건을 기록했으나 대체로 연간 20건 미만이고, 일본해운집회소의 해상중재는 연간 10건 정도이며, ICC중재도 매년 수건에 불과하다. 이로 미루어보아 ad hoc중재도 매우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사회는 20여 년 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왔고, 2007년 ADR활성화법 제정과 사법개혁, 중재법의 모범법 수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재이용도는 여전히 낮다. 현재 UNCITRAL의 2010 중재규칙을 반영한 중재규칙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활성화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中村達也, “日本の國際仲裁のこれから”, 『國際商事法務』, Vol.41. No.2, 2013, pp.191-194.

104) 栗田哲郎, “싱가포르國際商事仲裁(上)”, 『國際商事法務』, Vol.40. No.5, 2012, pp.683ff.

105) Tran Huu Quynh VIAC의장은 베트남뉴스 2013.4.27.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가 상사중재제도 육성 및 감독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는 점, 법원이 중재판정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재기관은 분명하고 투명한 증거와 이유에 근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 중재제도에 대한 기업이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중재인의 초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vietnamnews.vn/opinion/238746/firms-unaware-of-arbitration.html>.

106)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모범법을 수용하였다. 대만은 1998년 1961년 상사중재법개정시 모범법 채택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으나 몇 가지 주요한 특징만 채용하는데 그쳤다.

107)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내에서 행하여진 국제상사중재의 집행은 국제상사중재법 제19조에 의하여 뉴욕협약 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국제상사중재법 제2장에서 다룬다. 말레이시아는 1985년에 협약을 입법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81년 뉴욕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이의 실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은 1990년 제정되었다. 중국은 1987년에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를 1997년 홍콩에 확장함으로써 협약국의 영토범위에 포함되었다. 1987.7.1.이전 두 곳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집행이 보장되게 되었으나 이후 본국과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중재판정의 승인여부는 분명하지 않았다. 2000.2.1.부터 중재판정승인집행에 관한 합의가 발표하였다.

108) 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는 국가의 제도·정치리스크와 관련한 6개 지표(발언권,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과성, 규제, 법치주의, 부정부패)를 종합측정 한 것인데 -2.5~2.5사이에 위치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다. 베트남의 경우 -0.55로 사회적 안정성이 낮다. 김경훈 외, CEO Information 제883호,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제조명』삼성경제연구소, 2013.2.13, p.16.

기본적 틀을 갖추어 다시 출범한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성과물이다.¹⁰⁹⁾ 다만 법령정비작업에 대하여 법령의 외형을 갖추어 가는데 비하여 법의 유효성과 집행력은 극히 낮아 법제도가 현실사회와 괴리되어 있어 법령준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¹¹⁰⁾ 늘 있어 왔다.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재는 기피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 베트남중재제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원이나 집행기관과 같은 공식 기관의 업무능력이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¹¹¹⁾ 이에 더하여 아직까지 베트남기업들에게 중재는 낯선 제도로 여기고 있다.¹¹²⁾ 그 결과 대다수 상사분쟁은 법원판결로 해결되고 있다.¹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베트남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베트남중재기관을 중재기관을 정해 두는 것은 신속해결, 임시처분, 중재판정의 즉시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중앙통제적인 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경제로의 전환기에 베트남정부는 정부불간섭의 중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아직 중재기관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010년 중재법제정에 따라 외국인도 베트남에 중재기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VIAC의 위상으로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VIAC은 베트남 최대의 사업자단체인 상업회의소 산하로 1993년 이래 베트남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베트남인과 외국인 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어 활동해 온 역사,¹¹⁴⁾ 아래와 같은 실적, 평판으로 볼 때 대표적인 중재기관의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¹¹⁵⁾ VIAC은 특히 외국요소가 포함된 중재의 75%를 주관하였다. 중재법이 인정하는 ad hoc은 아직 등록되바 없다고 한다. 그동안 각 중재기관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109) 일본의 아세안중시정책의 결과로 아세안에 대한 ODA는 41억달러(2010년 기준)로 일본의 ODA원조 중 1위인데 베트남중재법제정에서도 일본의 역할이 컸다. 2011년 한국의 대 아세안 ODA는 금액기준 일본의 10분의 1수준으로 규모와 경험면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김경훈 외, 전제자료, p.19).

110) 岩瀬真央美, 前掲論文, p.26.

111) Lien, *supra* 8), p.570.

112) 2010년 하노이, 호치민시, 켄터 등 3대도시의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84%가 중재제도를 활용하바 없다고 응답하였다. Lien, *supra* 8), p.570.

113) 중재령 시행 후 10여년동안 중재 건은 280건 정도였다. 호치민시 경제법원(Ho Chi Minh City Economic Court)은 연간 약 1천 건(법관 1인당 연간 30건~50건 정도)을 다루고 있으나 VIAC의 최고기록은 2010년의 63건(중재인 1인당 연간 0.25건)이었다. Lien, *supra* 8), p.570.

114) 베트남 중재기관의 역사에 관하여는 Hanh,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and in Vietnamese law?", pp.1-14. Retrieved June 1, 2013, from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115) 물론 2003년 상사중재령 제2조가 규정한 섭외적 관할요건 3개 중 1개를 충족하면 누구나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VIAC이 독점기관은 아니다.

중재기관 (중재인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ICAC(20) *	6	5	7	0	0	0	n/a
VIAC(121. 그 중 외국인 2)	26	17	31	30	58	48	63
TRACENT(26) **	0	3	5	9	11	10	n/a
HCAC(6)***	5	9	3	n/a	n/a	n/a	n/a
Can Tho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6)	0	0	0	0	0	0	n/a
PIAC(26)****	0	0	0	0	0	0	n/a
Far East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5)	0	0	0	0	0	0	n/a

* Ase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 Ho Chi Minn City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 Hanoi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출전 : Lien, supra 8), pp.585-586>.

IV. 결 론

베트남에는 중재환경의 발전적 요소와 잠재적 위험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그 가운데 2011년 중재법제정은 베트남에 대한 글로벌투자가 증가하고 베트남이 각국의 주요교역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베트남정부가 중재를 중시하기 시작한 징표로 보인다. 중재를 선호하기 어려웠던 2003년 중재령에 대치된 새 중재법은 1985년 UNCITRAL모범법을 비롯하여 현대적 기준을 많이 채택하였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최소화한 것, 임시구제청구를 허용한 것, 중재인의 국적을 베트남인에 한정하지 않은 것, 중재조항에 중재기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정비에도 불구하고 짧은 개방 역사, 일천한 개발경험, 지속되는 1당지배 체제, 높은 정책변동가능성, 경제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민주화와 집권층의 반응 등 높아질 정치적 리스크, 불완전한 법의 지배와 중재판정의 확신할 수 없는 집행가능성, 습관적으로 법원에 의존하는 기업의 분쟁해결문화 등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UNCITRAL모범법의 전면수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상사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재법의 국제화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 중재법의 현대화에는 일본의 기여가 있었다. 한국이 법률수출에서 일본에 뒤진 사례이다. 법무부는 2013. 10. 30. 서울에서 베트남중재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제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재에 의한 상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여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베트남법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계경문·김종욱·이경희,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김광수·이양숙·이창훈,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보명 BOOKS, 2012.
- 이재민·문준조, 『최근 투자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ISD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고동원, “베트남의 분쟁해결제도”, 『금융』, 제642호, 전국은행연합회, 2007.
- 김경훈 외, CEO Information 제883호,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13.2.13.
-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 _____,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 - UNCITRAL 모범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 _____, “홍콩중재령에 있어서 UNCITRAL 모범법의 수용”, 『중재연구』, 제7권, 한국중재학회, 1991.
- 岩瀬眞央美, “ベトナム商事仲裁法”, 『JCAジャーナル』第57巻 8号, 2010.
- _____, “ベトナムにおける投資紛争処理制度の改革-仲裁法制を中心とする投資家對國家間紛争の處理-”, 『神戸商科大学創立80周年記念論文集』 2010.
- 栗田哲郎, “싱가포르國際商事仲裁(上)”, 『國際商事法務』, Vol.40. No.5, 2012.
- _____, “싱가포르國際商事仲裁(下)”, 『國際商事法務』, Vol.40. No.5, 2012.
- 中村達也, “日本の國際仲裁のこれから”, 『國際商事法務』, Vol.41. No.2, 2013.
- Mark Sidel, *Law and Society in Vietn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Simon Greenberg · Christopher Kee ·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2011.
- Brian J. M. Quinn, “Legal reform and it’s context in Vietnam”,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Vol. 15, 2002.
- Bui Thi Bich Lien,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Vietnamese version of the rul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Vol.6, 2011.
- Bui Thi Bich Lien,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 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 Gillian Triggs, “Is there an ‘ASIAN’ style of dispute resolu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23, 1999.

Thuy Le Tran, "Vietnam : Can an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exist?", *Loyola 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20, 1998.

William A. Herbert et al.,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 year in review: 2010 Reg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Law*, Vol.45, 2010.

Hop Xuan Dang, "Jurisdiction clauses in state contracts subject t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Vol.14 No.1 2011.

Alan S. Gutterman & Robert L. Brown, "GOGOLABAL § 40 : 54", (2012). Retrieved October 11, 2013, from <http://international.westlaw.com>

Albert Kritzer et al, "INT-CONT-M § 79A : 12", (2012), Retrieved October 11, 2013, from <http://international.westlaw.com>

Le Hong Hanh,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and in Vietnamese law?", Retrieved June 1, 2013, from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vietnamnews.vn/opinion/238746/firms-unaware-of-arbitration.html>

Terrence F. MacLaren, "ECKLICN-JV § 25:34", (2013), Retrieved October 11, 2013, from <http://international.westlaw.com>

ABSTRACT

An Overview of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2011

Sun-Jeong Kim

Vietnam has become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but confidence in the country's legal system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remains low. Reasons include the lack of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lack of published court decisions, and a tendency to criminalize civil disputes, among others. As such, arbitration has become a preferred alternative to litigation.

On June 17, 2010,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nam passed a new act on commercial arbitration replacing the July 1, 2003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new act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 2011, and it is widely expected by the Vietnamese legal profession and lawmakers will create a favorable legal framework for the expansion of the arbitration service market in Vietnam.

The new act is inspired by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of 1985 as are most new arbitration laws throughout the world. As opposed to the 2003 ordinance, the 2010 Act allows parties to request interim relief from the arbitrators. Also the new act eliminates the mandate that arbitrators be Vietnamese. The law has addressed the ordinance's shortcomings and reflects international standards.

Commercial arbitration law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improvement process of the laws o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However, it is still too soon to affirm anything definitely because there remain many obstacles to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Rule of law and business cultural factors are important. The leading arbitral institution, VIAC, which is attached to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boosting the competitiveness of Vietnamese arbitration as an avenue to dispute settlement.

Key Words :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Law, VIAC, Rule of Law,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in 2003, UNCITRAL Model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